

전기절약,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



법 무 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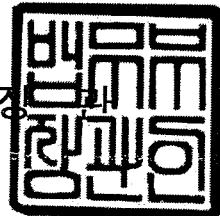
수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귀하
(경유)

제목 민원 회신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해외활동가 입국금지에 대한 공개질의에 대해 우리부의 답변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.

붙임 : 해외활동가 입국금지에 대한 공개질의서 답변 1부. 끝.

법 무 부



출입국관	서기관	과장	전결 2012. 9. 17.
리주사 유현승	최영길	안규석	
협조자			

시행 출입국심사과-22478 (2012. 9. 17.) 접수

우 427-705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11 (별양동, 뉴코아백화점) 8층 / <http://www.moj.go.kr>

전화번호 02-500-9122 팩스번호 02-500-9128 / sohan87@moj.go.kr / 비공개(5)



해외활동가 입국금지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



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

□ 질의 내용

- 2010년 이후 해외 비정부기구 운동가들에 대한 입국금지 사유와 구체적인 판단 근거
- 정부의 입국금지 처분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?
- 앞으로도 해외활동가들의 입국을 금지할 방침인지 ?
- 해외활동가들을 국익위해자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?
- 최근 5년간 입국금지 조치 건수(사유별)와 10대 주요 사유 등

□ 질의에 대한 답변

- 최근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은 과거 행적 등에 비추어 입국 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입국을 금지한 것입니다.

※ 출입국관리법 제11조(입국의 금지 등) ① 법무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.

3.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

- 특정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국가의 주권적 재량행위로서 그 세부적인 내용이 알려질 경우 외교문제 발생이나 국익수호를 위한 정부기관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